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군비검증정책 방향 연구

鄭 鍾 贊
(국방부 군비검증단)

1. 서 론
2. 군비검증의 개념
3. 군비검증 사례
4. 남북한 군비검증 환경
5. 군비검증 정책방향
6. 결 론

1. 서 론

냉전종식 이후 세계는 화해 분위기의 점진적 확산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핵·화생무기의 감축 및 확산방지, 재래식무기 규제를 위한 지역 및 다자간 군비검증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군비검증은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숙됨에 따라 미·소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이행 등 「국가간에 합의한 군사적 사항에 대하여 상호확인 함으로써 신뢰구축과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조약 위반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비검증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남북한도 국제 및 주변국의 군사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진전에 따라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비검증에 대한 제 학자의 견해를 살펴본 후 개념을 정립하고 군비검증사례를 검토 및 분석한 후 우리의 군비검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비검증의 개념

군비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사적·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차원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군비검증에 대한 개념, 성격 및 역할, 검증방법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¹⁾ 따라서 제1장에서는 군비검증에 대한 제 학자의 견해 및 개념, 역사적 발전과정과 국제사회의 군비검증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 학자의 견해

칼코스즈카(Andrzej Karkoszka)²⁾는 “군비검증이란 조약에서 규정한 의

1) 백진현, 군비통제 검증관련 기구 및 법령에 관한 연구보고서(미발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 9.

무를 수행하는 「程度」를 결정하기 위한 「過程」으로서 조약 당사자들이나 공인된 국제기구에 의해 인적·기술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크레스(Allan Krass)³⁾는 “군비검증이란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증거나 정보에 의해서 조약의 준수여부를 「證明」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모리스(Ellis Morris)⁴⁾는 “군비검증이란 한 국가의 행위가 특정 군비통제 조약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政治的 判斷」을 내리는 「過程」”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미 군축처(The US ACDA)는 “군비검증이란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을 준수하는 「程度」를 결정하는 「過程」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옥스포드 사전(Oxford Dictionary)은 “군비검증이란 조사(examination)나 증명(demonstration)에 의해 특정사항 및 진실이나 정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해 볼 때, 칼코스즈카는 검증을 조약 준수의 「정도」라고 규정하고, “군비검증은 「준수」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며, 100%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크레스는 군비검증을 「증명」의 측면, 즉 사실의 확인측면을 강조하였고, 모리스는 군비검증을 정보수집과 분석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Andrzej Karkoszka,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IPR, 1977, p. 13.

3) Allan Krass, Verification: How Much is Enough, SIPRI, 1985, p. 6

4) Ellis Morris,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Soviet Approach to Verification, in John O'Manique(ed.), A Proxy for Trust,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nada, 1985, p. 45.

(2) 군비검증의 정의

군비검증에 관한 제 학자의 견해를 분석해 볼 때, 군비검증분야 관련자들 사이에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군비검증의 개념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군비검증이 조약준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군비검증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 학자의 견해와 군비검증에 대한 문헌을 준용하여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군비검증이란 “국가간에 있어서 군비통제 합의·협정·조약에 따라 합의된 검증방법에 의하여 일방적·상호 협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국가의 조약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정하여 정의하였다.

그러면, 군비검증의 역할은 무엇인가? 군비검증의 역할은 조약준수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조약준수 여부를 탐지하며, 조약 위반시에 대응책을 강구하여 군사적 안정유지 및 조약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3) 군비검증의 역사적 발전과정

군비검증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면,⁵⁾ 군비통제 조약의 전망이 어두울 때에는 군비검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비통제 조약의 체결전망이 밝을 때에는 군비검증 합의가 별로 문제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군비검증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인 큰 사건을 중심으로 단계

5) 전성훈, 군비검증 발전 연구발표(미발행), 국방부 군비검증단, 1992.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1단계 : 헤이그 평화회의(1899년)

군비검증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것은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평화회의(Hague peace conference)에서였다. 당시 영국대표 존 아더(John Ardagh)는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의했으나, 이 제안은 당시 러시아에 의해 거부되었다. 러시아는 각국의 의회가 국제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는 군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검증문제를 논의하지 못하였다.

2) 2단계 : 군비축소 인식시대(1920~3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실시되었던 유일한 군비검증은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 패전국 독일의 무장해제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연맹의 검사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군비해제에 대한 검사는 독일의 계획적인 조약위반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⁶⁾ 대부분의 군비통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 기간 중에 중요한 군비통제 업적은 바로 1922년 2월 6일에 체결된 「워싱턴해군조약」이다.⁷⁾ 그러나 이 조약에는 군비검증에 관한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3) 3단계 : 군비축소 논의시대(1945~62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

6) Riekhoff, Harald Von(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nada, 1985, p. 13.

7) Riekhoff, Harald Von(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p. 14.

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사소한 조약위반도 「司法的」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군비검증에 대한 동·서간의 견해차가 매우 심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양 진영간의 견해차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방측은 군비검증이 군비통제조약에 선행하기를 원했고 소련측의 군사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획득을 군비통제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한 반면, 소련은 서방측의 군비검증 구상을 간첩행위의 조짐으로 인식하였다. 이시기의 군비통제에 관한 두 가지 주요제안은 바루치계획(Baruch Plan)과 영공개방 제안(Open Skies Proposal)이다.⁸⁾ 바루치조약과 영공개방 제안은 상대측에 대한 군사력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4) 4단계 : 동·서 화해시대(1963~79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군비통제협상은 「전반적인 완전한 군비축소」라는 포괄적인 군비통제 제안보다 검사문제가 용이한 - 범위가 축소된 -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 기간 중에는 군비검증에 대해 “어느 정도의 탐지능력을 갖추면, 조약위반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⁹⁾ 이러한 「전략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인공위성을 통한 혁신적인 원거리 정찰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에 의한 탐지시스템은 원거리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직접적으로 침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군비검증에

8) Baruch Plan은 미국의 행정관리인 바루치(Barnard Baruch)가 1946년 유엔에 상정한 제안으로서 국제통제기구가 자유로운 검사를 수행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된다면, 미국의 핵기술 독점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핵 기술이 미국보다 낙후되었던 소련에 의해 거부되었다.

또한 Open Skies Proposal은 195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후 4대강국 정상회담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 역시 소련이 거부하고 이 회의에서 소련 수상 니콜라이 불가닌은 핵무기 최초사용 금지, 위험한 군사활동의 조기경보를 위한 항구, 철도, 공항 등에 통제소 설치를 주장하였다.

9) 전성훈, 군비통제검증론, 한반도 군비통제자료 5, 국방부, 1991, p. 61.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 5단계 : 긴장시대 (1980~86년)

미·소 관계가 군비경쟁과 적대감으로 특징 지워지는 1980년대 중반은 단 하나의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군비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했던 「적절검증(adequate verification)」과는 달리 「효과검증(effective verification)」이라는 보다 엄격한 검증기준을 채택하여 강력한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군비통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 기간에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의 기본개념하에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6) 6단계 : 동·서 화해·협력시대(1987~현재)

1987년 12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간에 체결된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은 미·소 양국관계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부시대통령 취임이후 체결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I: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 in Europe)」과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은 「INF조약」보다 더 강력한 검증시스템이 제도화 되었다.

한편 유엔에서는 1988년 유엔결의에 따라 군비검증 16개 원칙을 결의하였다.¹⁰⁾ 군비검증 16개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군비검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

10) ①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의 필수요건이다.

② 검증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군비통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③ 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조약이 모든 당사자

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의 도래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인종·종교·영토문제 등으로 지역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중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이라크와 전쟁을 감행,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시킨 걸프전이 1991년 1월에 발발하였다.

걸프전 이후 유엔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유엔특별위원회

에 의해 준수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④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수단, 국제기술수단, 기타 국제적 절차 및 현장검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⑤ 군비검증은 사회가 개방화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⑥ 군비통제조약에는 합의된 검증방법, 절차, 기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⑦ 군비통제조약에는 검증을 방해하는 계획적인 은폐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⑧ 검증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가 군비통제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⑨ 검증에 관한 논의는 특정 군비통제조약 협상 시작부터 매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⑩ 모든 국가는 그들이 체결한 조약의 국제적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⑪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은 적시에 준수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준수에 관한 지속적인 확신이 신뢰를 쌓아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⑫ 특정 검증방법의 적절성, 효율성, 수용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개별 군비통제조약의 내용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⑬ 검증은 군비통제조약 가맹국에 의해 혹은, 가맹국 동의하에 관련기구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이며 가맹국 주권의 표시이다.
- ⑭ 군비통제조약에 의거하여 검사의 실시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검증과정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은 준수 여부의 결정에만 쓰여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⑮ 검증은 각 대상국에 대해 차별없이 행해져야 하며 대상국가의 내부 문제에 필요이상 간섭하거나 경제·기술·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⑯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군비통제조약에서 채택된 검증제도가 모든 관련 무기, 시설, 장소, 설비 및 행위를 남김없이 다루어야 한다.

(UNSCOM: United Nations Special Commission)를 구성하여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대량파기 무기에 대한 사찰활동을 수행하였다. 1999년 이후부터 유엔사무총장 관할 유엔감시검증 및 사찰위원회(UNMOVIC: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ttee)로 전환하여 이라크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찰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기본 바탕하에서 군비검증은 지역간·다자간 검증체제가 생성되어 세계평화를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 군비검증 사례

군비검증에 관한 국제적 사례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느린 템포로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실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 냉전시대가 도래되면서 군비검증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검증방법의 합의가 요구되었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체결된 군비통제 조약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군비검증의 국제적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스톡홀름 문서

1) 주요 내용

「스톡홀름 문서(Stockholm Document)」¹¹⁾는 유럽의 신뢰·안전 구축 조치 및 군축에 관한 문서로서 19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 1975)」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 Confidence Building

11)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3, pp. 151~154.

Measures)을 보완·강화할 목표로 1986년 9월 19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스톡홀름 문서」의 적용지역은 “대서양에서 우랄”(ATTU: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까지이며, 군비검증면에서 군사적 의미가 매우 큰 국제적 합의사항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스톡홀름 문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군사훈련 사전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13,000명, 탱크: 300대, 항공기: 200회 이상 출격 • 3,000명 이상의 해병대 및 공수부대 참가 훈련 (훈련개시: 42일전)
훈련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00명 이상 지상군 훈련 및 참가병력 5,000명 이상 상륙, 공수낙하훈련 참관(참가국당 2명), 비상훈련 (72시간)
검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통보 지상훈련 현장검증과 지상 및 공중감시
연중 군사훈련 일정표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차기 년도 군사훈련 실시계획 교환
규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 1년 전, 75,000명 이상 참가훈련은 2년전 사전 통보

2) 결 과

「스톡홀름 문서」는 검증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이 최초로 허용된 조약이며, 당사국은 검사요청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성이 내포된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엔나 문서

1) 주요 내용

「비엔나 문서」는 「스톡홀름 문서」를 보완, 신뢰안보구축 방안을 대폭 확대·개편한 국제적 군비통제 문서로 2차에 걸쳐 보완되었으며, 1990년 11월 17일 당시 34개국이 서명하여 199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후 「비엔나 문서」는 보다 완벽한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상으로 1992년 3월 4일 48개국이 가입하였으며, 1992년 5월 1일 발효되었다.¹²⁾ 「비엔나 문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비엔나 문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군사정보의 연례교환	· 군사력에 대한 정보, 주요 무기와 장비의 자료, 무기와 장비의 배치계획, 국방예산에 관한 정보
위험감소	· 비 정상 군사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협력, 군사적 성격의 재해발생시 협력,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방문
접 촉	· 공군기지 방문, 군사접촉, 신형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시
의사소통	· 당사국간 통신망 설치, 24시간 메시지 교환 장소 지정
연례이행 검토회의	· 합의사항 실천시 야기되는 문제, 차기년도 회의 의제와 일정 결정 * 회의는 분쟁방지센터(CPC: Conflict Prevention Center)에서 개최
5개항 추가 (군사력에 대한 정보와 무기 및 장비배치 규정)	· 부대방문 허용, 여단/연대급 부대당 1회 평가의무, 연간 16회 이상 수용할 의무, 해외 주둔군 방문 평가 * 동일국가 총 평가회수의 1/5이상 평가 불가

1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1, pp. 451~456.

2) 결 과

「비엔나 문서」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톡홀름 문서」에 없는 5개의 장을 추가하였다. 이는 ① 군사정보의 연례교환 ② 위험감소 ③ 접촉 ④ 의사소통 ⑤ 연례이행 검토회의이며, 이와 함께 교환된 자료에 대한 평가항목이 준수검증의 일부로 추가되었다.

추가항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연례적으로 군사력, 무기 및 장비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둘째, 위험감소를 위해 비정상 군사활동 자문 및 상호방문 셋째, 접촉의 경우 공군기지 방문, 군사접촉, 신형주요무기 및 장비 전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넷째, 의사소통과 관련 당사국 정부간 통신망 설치, 외교경로 보완, 송수신 장소 지정 등인데 접수메시지는 발송국 공식전해로 인정하고 합의 사항과 관련이 없는 메시지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다섯째, 연례이행 검토회의에서는 합의사항 수행시에 야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며, 차기연도 검토의제와 일정을 협의하는데 회의는 분쟁방지 센터(CPC: Conflict Prevention Center)에서 개최한다. 또한 군사력에 대한 정보와 주요무기의 배치계획에 대해 정보규정에 의거 제출된 정보를 평가하게 된다.

(3) CFE- I 조약

1) 주요 내용

「CFE- I」 조약은 1990년 프랑스 파리에서 29개국이 참가하여 서명되었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1992년 7월 17일 발효되었으며, 대서양에서 우랄지역(ATTU)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그룹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그룹간의 공격용 무기 보유상한선을 규정한 조약이다.

CFE- I 조약은 NATO그룹과 WTO 그룹간의 탱크, 장갑차, 야포, 항공기, 헬리콥터 등 5개 주요 공격용 무기에 대해 <표 3>과 같이 보유상한선을 설

정하였다. 이에는 각 그룹에 대한 전체 상한선 설정과 각 그룹에 대한 지역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CFE-I 조약 6조는 「방어충분성」 원칙에 따른 병력보유 최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CFE-I 조약 6조는 러시아에만 적용되었는데¹³⁾ 그 이유는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총수를 ATTU지역내 총 무기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러시아의 경우 장비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표 -3> 참조).

<표 3> CFE-I 조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무기상한선 (NATO/WTO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20,000대, 야포: 20,000문, 장갑차: 30,000대 • 항공기: 6,800대, 헬기: 2,000대
지역상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I (베루룩스 3국, 독일, 헝가리,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7,500대 이하, 장갑차: 11,250대 이하, 야포: 5,000문 이하 • 지역 II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로루시 군구, 카파티아군구, 키예프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10,300대 이하, 장갑차: 19,260대 이하, 키예프군구: (탱크: 2,250대 이하, 장갑차: 2,500대 이하, 야포: 1,500문 이하) • 지역 III(지역II, 포르투갈, 스페인, 모스크바군구, 불가-우랄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11,800대 이하, 장갑차: 21,400대 이하, 야포: 11,000문 이하 • 주변지역: 그리스, 노르웨이,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레닌그라드군구, 북카키시스군구, 트랜스카키시스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4,700대 이하, 장갑차: 5,900대 이하, 야포: 6,000문 이하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13,000대, 야포: 13,700문, 장갑차: 20,000대, 항공기: 15,150대, 헬리콥터: 1,500대

13)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군축전망,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1992, p. 257.

2) 결 과

CFE-I 조약의 정보교환의정서, 검증의정서와 합동자문단에 명시된 군비 검증방법은 통보 및 교환, 현장검증, 국가기술수단(NTM)¹⁴⁾과 국제기술수단(MTM),¹⁵⁾ 공증검사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기구는 「합동자문단」을 설치하여 검증하고 있다.

(4) 미·소간 핵무기 감축조약

1) 주요 내용

미국과 소련은 1972년에 제1단계 전략무기 제한 조약(SALT-I)을 체결하였다.

1단계 SALT-I 조약은 군비통제 역사상 최초로 NTM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 첩보수집의 방해를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를 설치하였다.

2단계 SALT-II 조약은 1979년 6월에 서명되었으며, SALT-I 조약에서 금지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시에 사전 상대측에 발사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통보조항을 추가하였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에 의거 사정거리 500~5,500km에 이르는 모든 지상발사 미사일이 1991년 5월까지 완전 폐기되었다.

검증시스템은 국가기술수단 사용, 폐기대상 미사일 자료교환, 현장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으며, 이중 현장검사는 기초검사, 폐기 및 폐기완

14) 국가기술수단(NTM: National Technical Means)은 자국이 보유한 정보획득 목적의 감시기술체계인 위성, 해상 및 지상레이더, 항공기 정찰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15) 국제기술수단(MTM: Mutifull Technical Means)은 우방국, 제3국, 국제기구통제의 기술수단으로 위성, 항공기 및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료검사, 임시검사, 생산시설 중 어느 한곳의 상주감시체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검증기구는 분쟁해결 및 정보교환을 위해 특별검증위원회(SVC: Special Verification Commission)와 핵위험감소센터(NRRC: Nuclear Risk Reduction Center)를 설치하였다.

INF 조약은 최초 현장검사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관련 조항을 보면 <표 4>와 같다.

탈냉전이후 강력한 군비검증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조약(START-1)은 미사일에 번호표 부착 및 폭격기, 핵탄두 검사절차를 합의하는 등 엄격한 검증체계를 구성하였다. 검증방법은 <표 5>와 같다.

1993년 1월에는 START-II가 체결되었으며, 2009년 12월까지 유효한 조약이다. 검증방법은 자료교환, 현장검사, 전시 등 START-I 조약의 검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4> INF 조약의 현장검사 관련 조항

현장검사유형	검사요원규모 (명)	사전통보 기간	검사횟수/유효기간
기초검사	10	16시간	· 발효 30일후 60일간 지속
시설폐기확인	10	16시간	· 폐기통보후 60일 이내 실시
폐기과정	20	72시간	· 3년
폐기완료확인	20	16시간	· 13년간 - 3년, 연간 20회 - 5년, 연간 15회 - 5년, 연간 10회
상주감시소	30		· 조약발효 30일후, 13년간

자료: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연구, 통일연구원, 1992, p. 205.

<표 5> START-I 검증방법

- | |
|---|
| ① 정보교환
② 국가기술수단(NTM)
③ 현장검사
기초검사, 변동사항 검사, 신 시설검사, 의혹장소검사, 핵탄검사, 기지
당 이동식미사일 수량검사, 전환/폐기검사, 시설폐기 확인검사, 폐쇄예
정시설검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중폭격기 식별검사,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 상주감시 등
④ 협력검증방안 적용
⑤ 기 구: 합동준수검사위원회 |
|---|

자료: 백진현, 군비통제 검증관련 기구 및 법령에 관한 연구보고서(미발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 61.

그리고 최근 START-III 조약은 미서명, 미발효된 상태에서 폐기, 투명성 조치, 신뢰구축조치 등이 검증관련 고려요소이며, 2007년 12월에 이행·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2년 5월24일에 서명된 전략공세무기감축조약(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은 BIC(Bilateral Implementation commission)기구 설치 후 검증을 이행하며, 2012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전략무기 검증제도와 관련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을 간략하면 <표 6>과 같다.

2) 결 과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는 핵 군비제한 및 감축조약의 발전적 변화에 따라 검증방법은 최초 상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찰위성에 의한 검증에서 상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사찰에 의한 검증으로 변화되었으며, INF 조약은 역사상 최초 현장사찰을 합의하여 제도화한 시발점으로 재래식무기 및 화생무기 검증에

실질적 모델이 된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시 군비검증 실행을 위한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전략무기 관련 주요내용

조 약	주 요 내 용	군 비 검 증
SALT-I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BM/SLBM: 수량제한 * 미: 1,710기/소: 2,347기 ○ 탄두: 제한 없음 	자국 정찰위성에 의한 검증 ※ SALT-II · 인공위성 사용 방해금지 · 은폐 행동 금지 · ICBM 발사 통보 ※ INF: 현장사찰 최초 적용
SALT-II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BM/SLBM/폭격기: 수량 제한 * 미국/소련: 2,250기(동일 수량) ○ 탄두: 제한 없음 	
INF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500~5,500km의 중거리 핵무기 전량 폐기 	
START-I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BM/SLBM/폭격기: 수량 제한 * 미국/소련: 1,600기(동일 수량) ○ 탄두: 6,000개(동일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찰 실시 · 851회(미:540회/러:311회) * '01. 5. 31 종료
START-II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두: 수량제한(300~3,500개) ○ 투발수단: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찰 제도화 · 정교한 사찰방법 적용 · 양국 협의 기구 설치 ※ START-II ↳ Exhibition개념 포함 ※ START-III ↳ 폐기, 투명성, 신뢰구축 내용 포함 ○ SORT의 검증 협의중
START-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두: 수량제한(2,000~2,500개) ○ 투발수단: 미적용 	
SORT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두: 수량제한(1,700~2,222개) ○ 투발수단: 미적용 	

자료: 국제군비검증 개념 및 체계 연구, 국방부 군비검증단(미발행), 2003.

(4) 시나이(Sinai) 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1) 주요 내용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제1차 시나이 군사분리협정(Sinai- I : The first Sinai Disengagement Agreement)이 1974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기습공

<표 7> 시나이 협정 주요내용

내 용	Sinai I (1974.1.18)	Sinai II (1975.9.4)
협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 병력 제한지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 병력제한지대 설치 · 상호감시초소 설치
지상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유엔긴급군의 시설 연계 이용 ·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긴급군의 완충지대 - 현장사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조기경보를 위한 상호 감시초소 운용 ·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긴급군의 완충지대 주둔 및 감시초소 감독 - 완충지대에서 미군에 의한 조기 경보체계 운용(유·무인감시초소)
공중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정찰 검증규정 없음 ·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지대 및 제한구역에서의 공중정찰 규정 - 양측 최전방 지역까지 비행 허용 ·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정찰 검증제도 도입 · 당사자: 완충지대 중간까지 합의된 일정에 따라 공중정찰비행 허용 · 제3자: 1회에(7~10일간) 한하여 당사국 및 유엔 요청에 의거 미국에 의한 정찰 수행
상호협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중재에 의한 당사국 대표회의(공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의단 설치

자료: 남만권·김명진, 시나이 협정모델의 한반도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p. 66.

격역제, 우발적 전쟁발발 가능성 감소, 조기경보의 확보 등 양측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형성으로 1975년 9월 제2차 시나이 협정(Sinai-II : The Second Sinai Disengagement Agreement)이 서명되었다. 시나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표 -7>과 같다

2) 미국의 지원

미국은 시나이지원단(SSM : Sinai Support Mission)을 미 국방부내에 구성하여 대통령 특별 보좌기구로 운용하였다. 미트라(Mitra), 기디(Giddi) 통로상에 지상조기경보체제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집트, 이스라엘 및 UN 긴급급에 전술조기경보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지원내용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미국의 지원내용

장 비 명	특 징
SSCS (Strain Sensitive Cable Sensor)	인원 및 차량 이동 탐지
PIRCS (Passive Infra-red Confirming Scanner)	인원, 차량수량 및 이동방향 및 속도식별
MINISID-III (Miniature Seismic Intrusion Detector)	50m 거리의 인원 및 500m 거리의 차량 지표면 진동 감시
DIRID (Directional Infra-red Intrusion Detector)	불법 침입 식별 및 이동방향 탐지
FLIR (Forward Looking Infra-red)	안개 및 먼지발생 상황하 표적 탐지 장비

자료 : 2002년도 군비검증업무 발전토론회 자료집, 군비검증단(미발행), 2002.

3) 결 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간 시나이 협정은 분쟁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제3자인 미국이 당사국의 합의준수 및 이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기술수단(NTM)이 주요 검증방법으로 적용된 점이며, 쌍방간 군사적 신뢰구축 형성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분쟁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5) 사례분석

이상에서와 같이 제반 군비검증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스톡홀름 문서」는 현장검증이 최초로 허용된 조약이며, 수검 당사국의 의무조항이 내포된 점에서 진전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엔나 문서」는 「스톡홀름 문서」의 보완된 문서로 군사정보의 연례교환, 위험감소 조치, 상호접촉, 의사소통, 연례 이행 검토회의를 추가한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본다.

「CFE-I」 조약은 냉전이후 소련연방 해체에 따라 NATO 그룹과 WTO 그룹간의 최대의 재래식무기 보유 상한선을 규정한 조약이다. 따라서 현장검증은 물론 NTM과 MTM을 최대로 활용하여 검증된 조약으로 평가된다.

INF 조약은 최초 현장검증 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START-I/II/III 조약은 현장검증 및 전시 등의 검증수단이 활용되고 있는 조약이다.

시나이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간 분쟁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군비검증은 상호 방문, 주요훈련 초청 및 참가 등 군사적 신뢰구축의 바탕 하에 낮은 단계의 검증에서 점차적으로 검증강도가 높은 현장검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남북한 군비검증 환경

남북한이 군비검증 문제를 논의한 시기는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군비통제가 회담의 의제로 다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체적으로 한국은 군비검증에 있어 구체적이었는데 비해, 북한은 원칙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군축합의를 우선하고 현장검증을 주장하였으며, 한국은 군축합의와 동시에 이행보장을 위한 검증의 합의를 제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에 남북간 군사회담이 진행되면서 제기된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간 군비검증의 추진여건 및 입장, 평가 및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⁶⁾

(1) 남북한 군비검증 입장

1) 북 한

북한은 전반적으로 군축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활동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군비검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북한은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비검증 활동은 의도적인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축에 관한 합의사항을 각각 우선 이행한 다음에 그 결과만을 검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와 관련시설에 대한 검증보다는 단기간내 급격한 병력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군축’이라는 정

16) 전성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한, 일본 3국 비핵지대 창설, 통일연구원, 1999, p. 19.

17)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제26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검증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p. 143~148.

형화된 정치·군사적인 무력감축을 선언하고 있으며 현장사찰 등의 검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군사분야 협상을 단지 시간 벌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군비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미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비검증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전 「과거 核」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 미국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병영국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수집이 곤란하고,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군사시설의 지하화 및 요새화로 국가기술수단(NTM: National Technical Means)에 의한 검증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북한은 내부의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군비검증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및 주변 군사환경 변화,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군비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 국

한국은 군비검증에 대해서 국제 군비검증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선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군비검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남북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적 합의사항은 반드시 검증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 견지하에 합의된 내용별로 적절하고 유

효과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군축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동참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국제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 군비검증기구에 사찰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넷째, 한국은 1976년 2월부터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의 정기사찰을 수용하고 있으며, 2002년 국회의 비준을 거쳐 생물무기 불사용을 선언하였다.

다섯째, 한국은 1988년 이후 국방백서 발간 배포 등 주기적으로 군사정보자료를 공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은 남북한 군비검증 및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군비검증단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평가 및 전망

국제적으로 군비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남북한은 상호 인식과 접근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군비검증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나, 국제 및 주변국의 군사적 환경의 변화,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남북상호 군비검증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비검증에 있어 남북한은 국가기술수단(NTM)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비검증에 대한 상호 부정적인 시각해소에 전력한 후, 검증에 필수적인 현장사찰, 상주감시단 배치 등 점진적인 검증영역 확대가 요망된다.

5. 군비검증 정책방향

국제적으로 군비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남북한은 분단상황에

서 군비검증에 대해 상호인식과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기간 군비검증의 실행을 기대할 수 없으나, 국제 및 주변 군사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의 군비검증 시행 도래에 대비하여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의 군비검증정책 방향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증체계적 측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 검증업무의 추진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군비검증 체계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군사분야에서는 진척사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비검증이 실현될 것에 대비한 실질적 군비검증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 군비검증 정책목표

정책목표는 남북한간 합의사항 이행 준수가 각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제하에서 상호 합의한 군사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쌍방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상태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합의사항 불이행 상태를 적기에 탐지하여 상호협의를 의거 시정을 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반사항을 조기에 탐지하여 시정조치 및 대응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증수단 선정에 있어 현장사찰, 상주감시, 항공사찰, 국가기술수단(NTM), 국제기술수단(MTM)을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¹⁸⁾

2) 군비검증체계 및 관련법규

현재 법령에는 군비검증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국방부 군비검증단령」 등이 있다.¹⁹⁾

상기 법령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방부내에서 군비통제 및 검증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군비검증에 관한 기본정책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1994년 「국방부 군비검증단」이 설치되어 현재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시에 대비, 사찰 및 호송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남북한 상호 군비검증 실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시 효율적 군비검증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예산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부산하에 「검증협의회」(가칭)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국방부 군비검증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으로 군사분야 합의시 군비검증의 실현에 대비, 군비검증과 관련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 군비검증의 주체

군비검증은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와 병행 남북한이 주체가 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남북기본합의」에 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군비검

18)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제26집, p. 149.

19) 백진현, 군비통제 관련기구 및 법령에 관한 연구(미발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p. 74~77.

증 기구를 설치하고 남북한 군비검증 관련, 이견 및 분쟁 발생시 중재, 대량살상무기 검증 등 검증사안 및 국제환경 여건에 따라 주변국, 군비검증 경험이 있는 제3국 및 국제기구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군비검증기구를 설치하고 국방부는 군비검증 실행부서로 군비검증단이 정책 입안 및 사찰·호송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핵 및 생·화학무기 등의 검증은 국제검증기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2) 효율적 군비검증 업무 활성화 방안

검증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영역의 확대, 인적·제도적 정비의 조치와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²¹⁾

1) 업무 영역의 확대

첫째, 기존 정책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남북한은 군사태세와 능력 그리고 검증 관련 기술 수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검증계획은 대비태세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바, 검증실천계획이 현실에 가깝게 가급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 연구를 비롯하여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현지 부대에서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자료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업무 개발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책업무 개발의 관건은 검증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폭넓

20)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제26집, p. 155.

21) 전성훈, 남만권, 군비검증업무발전토론회 자료, 국방부 군비검증단(미발행), 2002, pp. 23~28.

게 갖고, 국제사회의 검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의 역할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한 것은 우리 군과 사회내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군과 사회는 보안문제에 따른 정보의 공개와 내 것을 숨기려는 의도 즉, 노출을 꺼리는 관습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검증이 상대의 것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을 보여주는 “쌍방향적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검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증에 대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증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의 현실과 국제적 사례 및 관련 동향이 검증정책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각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제협력은 해외 기관으로부터 검증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 군사대화에서 북한과 검증에 대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검증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검증업무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해외현장에 현지방문 및 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현장실습에 바탕을 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상지역은 중동지역, 에쿠아도르·페루 국경분쟁감시위원회(MOMEP), 헝가리-루마니아 영공개방 등을 견학 및 방문하여 현장감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정보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는 것이다.

검증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검증실시 전후에 얼마나 효과적인 사전, 사후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전 정보는 검증의 목표설정과 검

증자원의 효과적 배분이 필요하며, 사후 정보는 검증실시 후 현장의 변화 여부 및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 관련 부서간 상호 인적교류 및 인트라넷, 인터넷을 활용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군비검증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강력한 군비검증 추진은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군비통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군비검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군비검증의 업무에 대해 홍보가 미흡했던 점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군비검증단은 「군비검증의 중요성」을 군 및 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국방일보, 국방저널, 국군방송, 국방인트라넷 홈페이지 구성 등 언론매체에 홍보활동을 증대하고 검증관련 세미나, 검증활동 관련기고 및 책자발간, 해외기관과 교류를 통한 군비검증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인적·제도적 정비

첫째, 인적 정비가 필요하다.

군비통제조약 합의를 적절한 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재래식 군비,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미사일 등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차출할 수 있는 상시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고 국제기구와 협조를 통해 대비태세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간 검증관련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라크 사찰 상황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UNSCOM 사찰팀과 현 UNMOVIC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의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추적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검증관련 법규 및 사무분장의 제도적 정비는 검증실무 관

런 사안을 군비검증단이 책임지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군비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합의사항 불이행을 사전에 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기술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탈 냉전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구 소련간 START, INF, CFE 조약 및 이라크 무기사찰 등 국가간에 합의한 군사적 사항에 대하여 상호확인 하는 검증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비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남북한도 국제 및 주변국의 군사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진전에 따라 군비검증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비검증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비검증정책과 효율적 군비검증 업무발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비검증정책 방향은 정책목표로서 남북한 상호 군사적 의도를 사전에 예지하고 중대위반 사항을 조기에 탐지 및 경고하여 오해·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예방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비검증의 주체는 남북한이 주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국제기구 및 제3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증수단은 냉전이후 국제적 추세인 현장검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효율적 검증업무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예의 분석하여 기존 검증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업무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

여 검증분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인적 정비는 재래식, 핵 및 화생 무기, 미사일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상시동원체제를 유지하고 UNMOVIC 같은 국제검증기구의 최근 활동상황의 면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정비는 군비검증 관련 모든 사안은 군비검증단 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정책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인 검증수단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아무튼 향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군비검증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 군비검증, 검증정책, 평화통일, 현장검증, 군비검증단



<ABSTRACT>

A Study on The Arms Verification Policy Oriented on the Central Arms Verification Case

Jung, Jong-chan

A arms verification is a difficult, important and complicated issue. It has not only technical and military dimensions, but also is a complex process involving economics and politics. Despite its complexity and importance, the arms verification has little in-depth studies about its concept, nature, function, methods, ec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rms verification activities have been in changing rapidly to adapt to a new world order. Counties confirm each other compliance requirements and other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Due to this, the importance of arms verification has increased.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alize the arms verification the in keeping with the change military environment of the international and neighborhood countries and progress of policy of in the reconciliation and coordination toward the North Korea of South.

But we do not have sufficient for the study and experience about the arms verification. Accordingly the effort for the arms verification policy and development provide against realization of the arms ver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an arms verification policy, first, the arms verification policy must contribute to foretell the mutual military inten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to prevent a collision of military power

upon misunderstanding or misjudgment and to build a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by an early detection and warning system for important violations.

Second, The arms verification has to be implemented mainly by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but coordin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third regime.

Third, the means of arms verification, after basic building the military conf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visit and invitations and participation of exercise, has to gradually conduct on-site inspection.

For arms verification to be effective it must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ing situation of South Korea.

For this, securing the specialization of the verification field and building strengthen the network concern the countries is required.

Second, the human resources and systematic adjustment are required. The human resources has to maintain usual mobilization system by securing the specialized manpower in the conventional,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missiles, ect.

Third, for this systematic change, the work of arms verification has to be organized so as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efficiently.

This study is mainly an emphasis on the verification policy. The technology side is not fully analysed. One must consider the short, middle and long term when seeking to realize progress on arms ver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 Arms verification, Verification policy, Peaceful unification, On-site inspection, Arms verification agency